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나2000973 판결 [채권매매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나20009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5가합57250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혁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주식회사 B

2. 한국무역보험공사

3. 주식회사 C

4. 한국수출입은행

5. 기술보증기금

6. 주식회사 D

7. 중소기업은행

8. 주식회사 E

9. F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보열

변론 종결2020. 7. 17.

판결 선고2020. 10. 23.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5가합572507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0. 11. 22. G에 대한 50억 원의 무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채권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매매대금은 H회계법인이 2010. 10. 29.자로 작성한 'G 경영정상화방안 검토보고서'(이하 'H회계법인 보고서'라 한다)에 기재된 무담보채권 회수율 19.2%를 적용한 960,000,000원(= 50억 원 × 19.2%)이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채권매매대금 9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G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산정된 무담보채권의 청산배당률이 2.61%에 불과하였고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무담보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사정 등에 비추어, H회계법인 보고서상 무담보채권 회수율 19.2% 및 이와 별도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I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이하 'I회계법인 보고서'라 한다)상 무담보채권 회수율 6.97%는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것이어서 원고의 채권매매대금을 산정할 때 이를 적용할 수 없다.

3. 판단

가. 채권매매계약의 성립

원고가 2010. 11. 8. 제5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 등의 의결에 반대하고 2010. 11. 22. 위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 기촉법 제24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의 G에 대한 50억 원 상당의 무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구 기촉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채권매수청구권은 반대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원고와 위 의결에 찬성한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G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나. 채권매매대금의 결정

1) 구 기촉법 제24조 제2항은 '협의회는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의 매입가격 및 조건을 반대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에 찬성한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에 매수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 및 조건은 협의회와 반대채권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하며,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 및 조건을 결정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협의회와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당해 부실징후기업의 가치 및 약정의 이행가능성을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과 매입기관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0. 11. 22.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회와 원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매매계약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부실징후기업인 G의 가치와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가액의 매매대금을 결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갑 제5, 8, 9, 12,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가) 내지 다)항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채권매매계약이 성립한 2010. 11. 22.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G에 대한 50억 원 상당의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은 H회계법인 보고서상 무담보채권 회수율인 6.97% 정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채권매매대금은 348,500,000원(= 50억 원 × 6.97%)이 된다.

가) 아래 ① 내지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H회계법인 보고서의 작성 목적과 작성 방법, 위 보고서에 G의 채무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보고서상 무담보채권 회수율 19.2%는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것일 개연성이 높아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적용하여 채권매매대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① H회계법인 보고서 서두에는 '보고서 작성시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만약 위 기준에 따랐다면 본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추가적인 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수 있으며, 위 보고서는 이 사건 협의회가 G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H회계법인은 피고 B의 위 보고서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반대채권자 채권 매수가격 산정에 위 보고서상의 청산가치 회수율을 적용하는 등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며, 위 보고서는 2010. 6. 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G이 감사받은 결산재무제표가 아닌 가결산 재무제표 및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작성된 것이고, 위 평가기준일 이후의 재산상태 변동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관계사 지급보증 및 기타 우발채무 현실화 금액 등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하여 청산가치 산정 시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우발채무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③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G의 청산가치 및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에 관하여 심리가 진행된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8139)에서 G의 청산가치 및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에 대한 감정을 위해 감정인으로 지정된 J는 2017. 9. 12.자 감정보고서에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면서 '회계법인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우발채무가 존재하고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나) G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산정된 무담보채권의 청산배당률이 2.61%에 불과하였고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무담보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채권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될 당시의 G의 재산상태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평가된 무담보채권의 청산배당률이나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채권매매대금 산정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 결국 I회계법인 보고서상 무담보채권 회수율 6.97%에 따라 채권매매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H회계법인 보고서상 무담보채권 회수율 19.2%는 우발채무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사유로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것일 개연성이 높으며 G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산정된 무담보채권의 청산배당률 2.61%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채권매매계약 성립 이후 악화된 G의 재산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매매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는 다소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 성립 당시의 무담보채권 회수율은 2.61%보다는 높고

19.2%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다.

② H회계법인 보고서는 2010. 6. 30.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10. 7. 1.부터 매매계약 성립일인 2010. 11. 22. 사이의 G의 재산상태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였음에 반하여 I회계법인 보고서는 매매계약 성립일로부터 불과 2주 전인 2010. 11. 8.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G의 재산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I회계법인 보고서는 2013년 피고 B로부터 원고의 G에 대한 채권의 매수가액 산정을 의뢰받은 데 따라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I회계법인은 그 이전인 2011년에 G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G 경영정상화 가능성 검토 보고'를 작성하면서 2010. 12. 31.을 기준으로 G의 청산가치를 산정한 바 있으며, I회계법인 보고서는 위와 같이 산정한 2010. 12. 31.자 청산가치에 기초하여 2010. 11. 8.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I회계법인 보고서 작성의 목적과 방법 및 그 근거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보고서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④ 원고는 I회계법인 보고서 작성 시 채권매매계약 성립 이후 G의 재산상태가 악화된 사정이 반영되어 매매계약 성립 당시의 무담보채권 회수율을 부당하게 저평가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보고서 작성 시 채권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채권매매계약 성립시점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설령 위 보고서 작성 시 채권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이 일부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위 J가 관련 사건의 감정절차에서 'I회계법인 보고서에는 K에 대한 용선계약 지급보증채무만이 반영되어 있으나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의 조사위원보고서 및 파산관재인보고서를 통하여 수 없이 많은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1)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채권매매계약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한 무담보채권 회수율이 I회계법인 보고서상 무담보채권 회수율 6.97%를 상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⑤ 피고들 역시 제1심 법원에서는 I회계법인 보고서상 무담보채권 회수율 6.97%를 적용하여 채권매매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지연손해금의 범위

1) 구 기촉법 제24조 제2항 후문2)은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에 반대채권을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채권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법리는 위 기간 내에 채권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자유탁약이 종료된 2011. 6. 30.에 경영정상화 이행기간이 종료되어 채권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다음날인 2011. 7. 1.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따라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인 2010. 11. 22.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 대상 채권 양도의무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매매 대상 채권을 양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채권매매대금 지급의무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 대상 채권은 무담보의 지명채권으로,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 그 채권은 채권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원고의 2010. 11. 22.자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원고의 G에 대한 채권은 피고들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구 기촉법 규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할 의무의 이행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채권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 전부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채권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의 제공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 3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선재

판사최승원

판사최웅영

1) 원고는 위 우발채무가 채권매매계약 성립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사건에서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을 감정한 J가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위 우발채무 중 상당수가 채권매매계약 성립시점에 이미 존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제24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의 매입가격 및 조건을 반대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에 찬성한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에 매수하도록 한다.